

What does it mean for the abuser to receive "notice" or be "served" with a protection order?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통보 받는다" 혹은 "송달 받는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 법원명령의 개인 송달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보호명령서를 직접 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집행관이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며, 전달 후 법원에게 명령이 송달되었다라는 증거를 제출한다. "통보" 라는 것은 가해자가 명령에 대해 알고 있다 라는 뜻이다.

What if you have a "mutual" protection order? 만일 서로가 "양자에 대한 보호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양자에 대한 보호명령"이란 쌍방간의 연락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법집행 제도와는 달리 취급되며 강제 집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만일 가해자가 먼저 보호명령을 신청한다면 당신도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쌍방 보호명령을 발행한다면, 당신과 가해자간의 보호명령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원에 요청한다.
- 다른 방법으로는 보호명령을 위한 별도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CRIME VICTIM RESOURCES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EMERGENCIES 긴급연락처:

카운티 경찰서 911
전국 피해자 센터 800-FYI-CALL

검찰청의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

호놀룰루시와 카운티 547-7401
하와이 카운티 934-3306
카와이 카운티 241-1898
마우이 카운티 270-7695

DOMESTIC VIOLENCE VICTIMS SERVICES: HOTLINE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락처

호놀룰루시 & 카운티	841-0822
하와이 카운티	322-7233
카와이 카운티	245-6362
마우이 카운티	
여성들이 여성을 도와주는 (보호소/ 긴급직통선)	808-579-9581
CFS 씨에프에스 (긴급직통선)	808-877-9888
몰로카이	567-6888
라나이	
여성을 도와주는 CFS 씨에프에스	808-579-9581 808-877-9888

SEXUAL ASSAULT VICTIM SERVICES HOTLINE: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락처

호놀룰루 시 & 카운티	524-7273
하와이 카운티	935-0677
카와이 카운티	245-4144
마우이 카운티	808-873-8624
(라나이 와 몰로카이)	866-443-5702

IMMIGRATION LEGAL SERVICES:

이민 법률 상담:

Hawaii Immigrant Justice Center

(formerly Na Loio - Immigrant Rights and Public Interest Legal Center)

Oahu: (808) 536-8826

Neighbor Islands: 1-877-208-8828

KOREAN

**Increasing Your
Safety:
Full Faith & Credit
For Protection Orders**
당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명령에 대한 법률
집행제도

**DO YOU HAVE A
PROTECTION ORDER?
AND,
보호명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 타주나 다른 미국 영토로 이주를 하십니까?
-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커뮤니티에 계십니까?
- 타주에서 학교를 다니실 예정이십니까?
- 타주 이벤트에 참가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프로젝트는 여성폭력예방센터, 정의실현사무실, 미 법무부에서 보조금 No 2002-WE-BX-0049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의견은 저자의 의견이므로 받드시 미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HAWAII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하와이주 법무부
체포정책 교육 프로젝트 지원
235 South Beretania Street, Suite 401
Honolulu, Hawaii 96813
Telephone (808) 586-1150
Fax (808) 586-1373

WHAT IS A TRO, PROTECTION ORDER OR INJUNCTION?

임시접근금지명령과 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

- 임시접근금지명령, 보호명령과 금지명령(보호명령)은 법원에서 발행된다. 보호명령은 가해자로 하여금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명령이며 다른 보호도 포함된다.
- 보호명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된다. 보호명령 신청이 당신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WHAT IS FULL FAITH AND CREDIT?

철저한 법이행과 집행제이란 무엇인가?

- 철저한 법의 이행과 집행이란 보호명령이 발행된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미국 내의 50 개주를 포함하여, 인디안 부족 거주지, District of Columbia 와 U.S. 버진 아일랜드, 포에토 리코, 아메리칸 사모아, 사이판 및 광을 포함한다.
- 철저한 법이행과 집행제도는 미국 전역에 걸쳐 유효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타지로 이주할 수 있게 해준다. 만일 가해자가 당신이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주시에도 따라와서 보호명령을 어기게 되면, 바로 그 해당 관할 지역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OUR PROTECTION ORDER IS ENTITLED TO FULL FAITH AND CREDIT IF IT IS VALID.

당신의 보호명령이 유효하다면 철저한 법 집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호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효하다

- 당신과 가해자의 관할 구역 법원에서 발행하였으며, 그 법원이심리를 통해 결정을 내렸고
- 가해자에게 적절한 통보가 전달되었고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PRACTICAL TIPS

도움의 밑

- 보호명령서를 법원에서 증명을 받는다. 증명을 받은 서류는 법원의 도장과 봉인 또는 담당 판사나 법원 서기의 서명을 포함한다. 하지만 증명을 받아야 보호명령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 가해자에게 보호명령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담당 집행기관이나 명령을 발행한 법원으로부터 받는다.
- 보호명령서과 통보 확인서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
- 보호명령서의 사본을 직장 상사, 학교, 및 친구나 친척 그리고 명령을 집행하게 될 해당 기관에 배부한다.
- 당신의 보호명령을 하와이에서는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등록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가정폭력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등록 절차와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포함한 가해자의 모든 위반사항을 기록한다. 당신이 유일한 증인일지라도 그렇게 한다. 이러한 기록이 성립되면 담당기관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안전 대책을 세운다
-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간다
- 해당지역 내의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에 연락을 한다
-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구한다

PRACTICAL TIPS ON SERVICE AND NOTICE

명령 송달과 통보에 관한 도움 밑

명령 송달과 통보에 관한 도움 밑

대부분의 경찰관은 가해자가 명령을 전달받았거나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일방적인 보호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보호명령서를 최소 한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2부)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해자의 위반을 신고할 때 경찰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 명령이 송달되었거나 가해자가 명령서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경찰에게 제시한다.
- 가해자의 위반을 신고하기 전에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경찰관이 통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찰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 위반에 대해 체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보호명령이 송달되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것을 부탁한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긴급명령이나 가해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보호명령도 연방법에 의해 유효한가요?

- 가해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보호명령이나 임시 보호명령은 가해자에게 통보없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다. 그러한 명령들은 지정된 기간동안 발행 관할 구역에서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15 일간 유효한 명령은 15 일 동안만 그 지역내 어느 곳에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가해자가 통보를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